

「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0월 20일

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사회복지국장 박 경 하

나. 제안이유

-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 예우 수당 인상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보훈 예우 수당 5만원 인상 : 월 5만원 → 월 10만원(안 제8조)
- 지급 연령 제한 폐지(안 제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,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조례안은

-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 예우 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<보훈 예우 수당>은 도내 기준으로 기존 하위권 수준에서 중상위권 수준으로 상승하고, 도내 13개 시군 및 인근의 김천시와 같이 지급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보훈대상자의 예우 수준을 상향할 수 있음. 조례 개정예 상위법 위반 사항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